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민 우선 예약을 확대하여 구미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외부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구미시민 우선 예약 확대(안 제5조의2제3항)

: (당초) 숲속의 집 5개동 → (변경)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15개소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
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
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제3항 본문 중 “숲속의 집 5개동”을 “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15개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5조의2(시설의 예약)</u> ① · ② (생 략) ③ 시장은 <u>숲속의 집 5개동을</u> 구미시민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.	<u>제5조의2(시설의 예약)</u>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숲속의 집 및 산림문</u> <u>화휴양관 15개동을</u> ----- ----- .

관계법령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제21조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생략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9조의9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 ① 생략

② 생략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~3. 생략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~카. 생략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
및 관리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소 관 부 서		산 립 과
입 안 자	과 장	장 지 욱
	팀 장	박 현 아
	담 당 자	전 찬 숙 (480-5882)